

아동학대에 대한 젠더 분석: 남성성, 돌봄, 재생산권

추 지 현*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2020년 한해동안 사망에 이른 22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비판적 젠더 연구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남성됨의 자원으로 삼는 실천이 아동학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내학대와 아동학대 사이의 구체적 메커니즘, 가족 중심 복지체계의 특성이 이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양육 부담감이나 우울로 환원할 수 없는, 성적 존재로서 여성의 다양한 생애 경험이 엄마됨에 대한 인식과 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젠더 관점의 복지, 의료, 교정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젠더는 계층, 장애 등과 교차하면서 돌봄제공자로서 여성의 위치와 취약성, 나아가 성과 재생산 권리 실행을 상이한 방식으로 구조화하며 아동학대를 야기하고 있다. 아동 보호의 1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방식을 문제 삼고 돌봄제공자에 대한 돌봄 필요성 인식을 통해 아동학대를 바라볼 것이 요청된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1.12.31.4.33>.

❖ 주제어 : 아동학대, 자녀살해, 아내학대, 돌봄, 남성성, 페미니스트 범죄학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I. 서론

1. 문제제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래, 예방과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법 개정도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한 개인이 아동의 보호자가 되어 살아가는 과정을 살피고, 그것이 어떻게 학대를 야기하는지를 설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부족하다. 뇌출혈, 혼수상태, 췌장 파열 등의 어휘와 명든 몸 사진이 환기하는 아동학대의 이미지는 아동을 건강하게 돌볼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한 나쁜 보호자의 문제로 아동학대를 바라보기 충분하게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좋은 엄마’와 이를 방기하는 ‘나쁜 엄마’라는 이분법 역시 이 과정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계모, 양모, 동거녀, 양외할머니 등 아동학대의 가해자를 지시하는 어휘들만큼이나 아이를 돌봐야 할 책임이 여성에게 우선되어 있는 현실은 정작 아동학대의 예방책 마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또 다른 엄마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피켓팅과 SNS를 통한 탄원서 수집, 모성애의 국경 없음을 호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0년 한해동안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30,905건의 사례 중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전체의 44.5%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20 : 26). 가해자 대다수는 남성이지만, 결코 적지 않은 여성들이 아동학대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가해자됨을 강조하는 아동학대 담론의 한계를 비평하는 것을 넘어 남성 혹은 여성이 아동학대에 이르기까지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젠더는 단순한 성별 범주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로서 사회 구성 원리의 하나다. 이것은 한 개인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위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특정한 성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 아동 양육에 대한 태도와 실천, 부모로서 자신의 정체성 등 광범위한 영역에 작동하고 있다. 아동의 삶이 이와 같은 젠더 관계의 산물이라면, 아동학대 분석에 있어 ‘보호자’의 위치와 경험을 젠더 관점에서 읽어 내는 것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젠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미진하다. 젠더 중립적으로 보이는 아동 정책에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진 것도 2019년, 최근의 일이다. 1980년대 이래 꾸준히 확장된 아동학대 연구는 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빈곤 등을 주된 설명 변수로 삼아 발전해왔고 오늘날에는 종합적 이론화를 피하고 있지만(안성경 외, 2012; 이상균 외, 2017), 각각의 변수나 메커니즘에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의 페미니스트 연구는 고전문학에서부터 오늘날의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자녀, 가족, 지역사회, 심지어 자신까지 파괴하는 ‘나쁜 엄마’에 대한 표상 분석을 해왔지만,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넘어 아동학대 발생 과정에 대한 분석적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30여년 전, 애쉬와 캔은 ‘나쁜 엄마’로 여겨지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페미니즘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젠더화 된 질서의 피해자 혹은 자율적인 권리 주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성들의 삶을 맥락화하고,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내놓는 것이 젠더 관계의 변혁을 지향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의 과제임을 주장한 바 있다(Ashe & Cahn, 1993). 2006년, 「페미니스트 범죄학(Feminist Criminology)」의 창간호에서도 치즈니린트는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 없이 거시적 젠더 관계의 불평등을 논의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도, 형사사법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도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범죄 현상을 통해 페미니즘의 의제와 논의 프레임을 확장하기 위해 피해자로 국한되지 않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페미니즘의 연구 관행을 벗어나길 요청했다(Chesney-Lind, 2006). 2009년, 정혜숙은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에서 아동학대와 아내학대가 중복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관심을 촉구하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젠더 쟁점을 제시한 바 있다(정혜숙, 2009).

이러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비판적 젠더 연구가 정교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례에 대한 판결문 정보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구체적 쟁점을 탐색하기 위한 예비적 분석을 진행했다. 2020년 기준,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는 전체 피해자의 0.19%에 그치며(보건복지부, 2020 : 70) 이를 아동학대의 전형으로 삼기는 어렵지만 모든 아동학대의 양상과 맥락을 젠더 관점에서 포착할 수 있는 선행 연구와 자료가 불충분한 점, 오늘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바로 이러한 형태에 집중되면서 젠더를

비롯한 구조적 진단이 지연되고 있는 점, 그 현안을 재료로 삼아 변화를 위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고려(Chesney-Lind, 2006)로 검토 대상을 설정했다.

2. 이론적 배경: 모성과 여성-복지-형벌의 관계

아동학대는 부모는 물론 친인척, 부모의 동거인이나 보육 및 교육 담당 대리양육자 등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발생한다. 그 중 가해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은 부모¹⁾이며 아동학대 관련 페미니스트 논의 역시 자녀를 돌보는 엄마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돼왔다. 많은 연구들은 모성을 자연화하고 돌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모성 이데올로기가 형벌 혹은 복지라는 이름의 제재를 통해 재생산되는 상황이 신자유주의 질서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진단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복지 개혁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정책을 둘러싸고 엄마의 책임과 ‘보호 실패’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면서 정책의 수립 과정에 남성의 역할이 더욱 보이지 않게 되었음이 지적된다(Lister, 2006). 미국 클린턴 정부의 부양아동지원제도 폐기 과정 역시 유사하게 평가된다. 홀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여성들이 빈곤으로 인해 성판매, 마약소지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되자 보수적 가족 규범을 지지하는 관료와 전문가들이 이들에 대한 감시망, 여성에 대한 처벌 확대를 요구하며 아동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개인화했다는 것이다(Gordon, 1994; Gelthorpe, 2010). 여기에는 여성 단독 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동원되기도 했는데,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명확한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복지수급자의 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더욱 쉽게 포착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Widom & Osborn, 2021; MacDaniel & Slack, 2005).

겔스토프는 여성들의 복지 수급 자격에 대한 의심, 이에 터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집중된 감시 등 가족주의 형사사법이 빈곤 여성들을 통제하는 방식, 즉 ‘여성 가난의 범죄화’는 여성이 속해야 할 위치가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새로운 현상도 아니라 주장한다(Gelsthorpe, 2010). 또한 리사 마허는 1990년대 미

1) 2020년 기준 그 비율은 82.1%에 이른다(보건복지부, 2020:64).

국의 “마약과의 전쟁” 당시 크랙을 흡입하는 임산부 및 어머니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기획을 사례로 들면서, 가난한 유색 인종 여성들의 몸에 대한 규제는 형사 기소보다는 아이의 타가정 위탁, 복지 급여 및 공공 주택 지원 자격 박탈 등 복지 절차상 제재를 통해 더욱 빈번히 이뤄져왔음을 주장했다. 이때 형사사법은 그러한 접근의 정당성을 둘러싼 담론 지형을 형성하는 힘을 발휘하되 정작 여성들이 약물 중독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없는 남성 중심의 치료모델을 이어갔다고 지적한다(Maher, 1992). 웨스트와 리히텐스테인은 형사정책과 복지정책의 위와 같은 기능적 보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2001년, 5명의 자녀를 육조에 익사시킨 후 산후정신증에 의한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받고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안드레아 예이츠 사건을 분석한다. 그녀가 앓았던 산후정신증이 아이들을 ‘위해’ 그들을 살해해야한다는 망상까지 만들어내는 이상적 어머니 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력, 자녀 돌봄 과정에서의 사회적 고립, 아이 아버지의 지원 부재 등에 의해 야기되고 있음은 물론, 아픈 아버지와 아이들을 혼자 돌보아야 했던 파트너, 딸, 엄마로서 예이츠의 복합적 경험은 온전히 공론화 되지 못했음을 비판한다. 나아가 그녀가 자신의 살해 행위가 갖는 의미를 그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신이상 항변(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을 통해 무죄를 호소해야 했던 상황에도 주목한다. 그녀에게 형벌 혹은 무기한의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결과일지를 되물으면서, 여성들은 수감행위와 같은 전형적인 법 권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몸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 의료적 치료와 규제, 사회적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배치 속에서 유순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음을 주장한다(West & Lichtenstein, 2006). 이는 처벌의 개념을 형사법적 규제를 넘어 폭넓은 사회통제의 기제로 확장해 사유해야 한다는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의 주된 논거이기도 하다(Fox, 2000; Maher, 1993).

이와 같은 복지와 형벌간의 관계에 대한 영미권의 논의를 2000년대 중반 이래 보육 관련 정책과 예산이 확대되어 온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형벌 및 복지 정책이 엄마노릇(mothering)과 돌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속되고 있다. 추지현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 처벌 강화의 움직임을 추동한 강력한 아동 보호 담론은 아동의 1차적 보호 주체를 엄마로 호명하고 아동 안전과 돌봄의 책임을 개인화하는 통치 기제의 일부였음을 주장한다(추지현, 2014). 김수정·황정미(2019)는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를 둘러싼 대응을 사례로, 영유아 돌봄에 대한 ‘공공성’이 부모의 양

육비 경감이나 국가의 비용지원을 통한 민간시설 이용 확대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며, 그간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서 담당해 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거나 돌봄 노동자들의 적정 처우를 제도화하는데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 연구는 아동학대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열악한 돌봄 노동의 조건이 가족을 넘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문제화 하는데도 고려되어야 할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히 할 것은 모성 이데올로기와 돌봄의 분배 방식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이 모성을 거부하는 대상 혹은 여성 억압의 기제로만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성적 실천이 인간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취약성과 의존성을 특성으로 하는 모든 인간에게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성별분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그간 가치절하 되어 온 돌봄을 사회 정의의 원천으로 구성하기 위한 논의로 확장되었다(Tronto, 2013; Kittay, 2019). 특히 키테이는 1차적 돌봄 단계에서 의존인의 돌봄제공자에 대한 의존성은 불가피한 것인데 반해,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돌봄제공자의 의존성, 즉 돌봄 제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의 심화는 사회구조에 기인하는 것임을 분명히한다. 그래서 양자 관계의 쌍무적 호혜성을 넘어서 제3자의 돌봄 의무, ‘함께 돌봄(caring with)’의 연대성 실현을 요청한다(Kittay, 201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안녕은 그저 ‘보호자’ 개인의 책임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 ‘보호자’를 사회적으로 돌보는 일이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근본적인 과제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한 키테이의 논의에서 주목할 것은 모성 실천의 ‘차이’에 대한 사유 요청이다. 예컨대 그 실천의 일부인 성장의 증진에 있어 중증장애아에게는 비장애아와는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생명 보존을 위한 엄마의 사랑과 관심 역시 하루도 빠지지 않는 평생의 가담을 수반할 수 있다. 가용 자원의 부재로 온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비장애아조차도 성장이나 사회화를 기대하기 힘들다(Kittay, 2019). 이러한 문제의식은 아동은 물론 장애인, 환자, 노인과 같은 돌봄을 받는 사람과 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돌봄의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 그것들의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지속되고 있다(김영옥 외, 2020).

- 2) 그녀는 러딕이 아이를 기르는 모성 실천의 필요 요건으로서 언급한 생명 보존을 위한 사랑, 성장의 증진, 사회화의 준비 등 세 가지를 돌봄 제공자의 의존 노동 전반의 특성으로 확장하되, 이를 통해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관계들을 포착하기 위해 그것들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여성의 몸을 둘러싼 형벌 및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앞서의 논의는 아동을 돌볼 책임이 부여된 ‘보호자’로서 여성의 위치가 엄마뿐만 아니라 복지수혜자, 임노동자, 나아가 누군가의 아내나 딸이기도 하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또한 페미니즘의 돌봄에 대한 관점은 아동을 넘어 그 ‘보호자’에 대한 돌봄이 과연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게 만든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들의 다층적 위치, 피돌봄자에 대한 돌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젠더의 작동 방식을 포착하고 관련한 선행 연구와 쟁점을 살펴본다.

II. 연구 자료 및 방법

이 연구에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서 정한 ‘아동학대관련범죄’³⁾, 그 중에서도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다. ‘보호자’의 상황과 아동학대 발생의 구체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된 판결문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고가 이뤄진 사건 중, 관련법령이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인 경우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그리고 살인, 살해, 형법 제250조~제255조가 함께 등장한 것들이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적 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개연성 있는 설명으로 간주했다. 총 22건이 수집되었고 사건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⁴⁾

이 중 피고인이 아동과 사실상의 가족관계(사실혼 포함) 밖에 있었던 경우는 사례16, 1건에 불과했고 보육, 교육, 보호기관 종사자에 의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따라서 이하의 아동학대 대다수는 ‘자녀살해’^{filicide}로 명명되는 가족 내 아동학대 사안이다.⁵⁾ 이 21건 중 학대 행위자가 엄마 단독인 경우는 11건, 아버지 단독인 경우는 7건, 부모가 함께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4) 해당 자료는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https://www.scourt.go.kr>)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통해 수집했다. 해당 기간 중 선고가 이뤄졌으나 다른 심급의 판결문이 그 기간을 벗어나 존재하는 경우에는 맥락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파악하기 위해 포함했다(사건번호는 1심 기준으로 <표 1>에 제시함). 2021년 11월 1일 현재 2020년 재판이 진행되었던 “양천 정인이 사건”은 열람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상태다.

5)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결과에서도 사망 사례 학대 행위자 중 96.2%는 부모나 그들의 동거인이었다(보건복지부, 2020:78).

학대한 경우는 3건이었다. 그리고 1세 미만의 영아가 사망한 경우infanticide는 7건, 분만 직후에 사망한 경우neonaticide는 3건, 아동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3건이다. Ⅲ장 이하에서 살펴볼 내용을 선취하여 그 쟁점을 <표 1>에 제시했다. 크게는 ① 파트너인 여성과 그 자녀를 지배, 통제하려는 실천으로서 남성성(젠더폭력, 자녀 살해 후 자살, 훈육 방식), ② ‘보호자’로서 여성의 역량을 제약하는 과거 생애 경험(젠더폭력, 피돌봄부재, 우울 요인), ③ 양육의 보다 직접적, 현재적 조건이 되는 임신 및 출산 과정(재생산권)과 돌봄노동의 부담 등 세가지다.

<표 1> 참조 사건 판결문 정보

연번	사건번호 (1심기준)	죄명	피고인	피해자	쟁점
1	대전 서산지원 2019고합105	1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방임)	모	딸(2세)	돌봄노동
2	제주지법 2019고합33	1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계)모	아들(5세)	돌봄노동
3	창원 진주지원 2019고합120	1	부	아들(3개월)	남성성(훈육), 돌봄노동
4	인천지법 2019고합898	1	모, 모의 친구, 모의 동거남	딸(3세)	피돌봄부재, 남성성(훈육), 재생산권
5	창원 통영지원 2020고합8	1	모	딸(199일)	피돌봄부재, 재생산권
6	대구 서부지원 2019고합250	1	부	아들(3세)	남성성(훈육)
7	수원 여주지원 2020고합9	1 + 아동복지법위반 (상습아동학대)	(계)모	아들(8세, 지적장애 3급)	돌봄노동
8	의정부지법 2019고합310	1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방임)	모, 부	딸(3개월)	피돌봄부재
9	대전지법 2020고합30	1	부	아들(2개월)	남성성(훈육)
10	서울서부지법 2020고합42	1	부	자녀(82일)	남성성(훈육)
11	인천지법 2020고합65	1	모	아들(5세)	젠더폭력, 돌봄노동
12	창원지법 2019고합226	1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방임)	부	딸(15개월)	남성성(젠더폭력)
13	수원지법 2020고합419	1	부	딸(5세)	남성성(훈육)

연번	사건번호 (1심기준)	죄명	피고인	피해자	쟁점
14	광주지법 2020고합335	1	모 (20대초)	아들(22개월, 중증 장애)	피돌봄부재, 돌봄노동
15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25	살인	부	아들(3세)	남성성(살해후자살)
16	수원 안산지원 2019고합80	살인, 폭행	모의 교제남	아들(2세)	남성성(젠더폭력)
17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42	살인	모 (40세)	아들(3세)	우울
18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65	살인	모	딸(9세, 자폐성발달 장애2급)	우울, 돌봄노동
19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614	살인, 살인미수, 자살 방조	모	딸(10세), 아들(6세)	우울, 돌봄노동
20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354	영아살해	모 (20대초)	딸(0세)	재생산권
21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4740	영아살해, 사체유기	모, 부	미상(0세)	재생산권
22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314	영아살해, 사체유기	모	미상(0세)	재생산권, 피돌봄부재

1=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Ⅲ. 젠더 폭력과 남성성

1.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동시발생

아동학대 재현의 한계는 계모에 대한 편견 심화, 피해 아동의 고통과 개인 정보를 염두하지 않은 자극적인 보도 등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은 남성의 부재다(Lister, 2006; Stark & Flitcraft, 1988). 이는 여성에게만 아동 돌봄의 책임을 묻게 만드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성애 파트너 사이의 젠더 관계가 어떻게 자녀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비가시화한다. 이와 관련한 가장 오랜 연구의 쟁점은 자녀학대와 아내학대의 동시 발생이다(Semaan et al., 2013; Lapierre & Côté, 2016; 김기현 외, 2018; 이인선 외, 2017). 오늘날에는 이 현상 자체의 실증을 넘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확장되고 있는 바, 아내학대 피해로 인한 여성의 분노와 상

실감이 자녀에게 전이된다거나(장희선 외, 2016; 이상균 외, 2017),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자녀 학대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재경·박명숙, 2014)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피학대 아동의 어머니인 여성이 남편 혹은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세 사례는 이와 같은 설명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례12, 16은 아동 학대 가해자가 모두 남성이었고 이들의 아동학대 과정에 파트너인 여성이 가담한 상황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여성이었던 사례11 역시 자신의 피해를 자녀에게 귀책시키거나 직접 학대에 나서지 않았다.

사례12의 피고인은 아내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재결합을 요구하며 15개월된 딸을 데리고 왔지만 돌보지 않았다. 딸이 침대에서 자다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뼈 골절, 급성경막하 출혈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가 양육 의지 없이 딸을 데리고 온 것은 아내의 귀가를 의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16의 피고인은 교제중인 여성의 세 살된 아들을 살해했다. 아들 때문에 그녀가 자신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에 아이에 대한 위협을 반복하다 이에 저항하는 여성을 폭행, 감금하고 아이를 약취, 살해했다. 1심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전 조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릴적부터 “이성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실패한데 따른 무력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 자신의 남성으로서의 지위 상실에 대한 불안이 여성과 아이에 대한 통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많은 연구들은 아내학대와 아동학대 모두 가족 구성원을 자신의 통제와 지배하에 두려는 남성성의 결과라는 점에서 동시 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해 왔다(Adinkrah, 2001; Wilczynski, 1995). 남성성은 그저 생물학적 남성의 보편적 행태나 성역할 규범 수행을 지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조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남성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는 실천을 지칭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자신의 남성됨을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의 설명은 젠더 폭력을 넘어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젠더 수행 그 자체로 설명하려는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Miller, 2014; Messerschmidt and Tomsen, 2018).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 예컨대 자신의 남성됨에 대한 확인과 인정 욕구가 큰 이들, 이를 실행할 다른 제도적 수단이 없는 남성들이 자녀와 아내에 대한 폭력을 동시 행사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들 역시 개선되어 왔다(Bennett & Williams, 2003; Tajima, 2004).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공유 기반에 대한 설명을 넘어선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다. 친밀한 관계의 젠더 폭력에서 흔히 포착되듯, 남성의 폭력은 여성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 즉 부모나 동생, 물건, 반려동물에 대한 폭력과 손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Collins et al., 2018). 그리고 아동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갖는 사랑과 애착이다. 위의 두 사례에서 아동은 여성을 자신에게 종속시킬 효과적인 ‘인질’ 혹은 ‘미끼’ 중 하나였다(박언주, 2014). 사례12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것은 아내학대 가해자의 폭력에 저항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대응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여성들이 이성애 파트너에 의한 피학대 상황에서 그와 같이 대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례11의 피고인은 전 남편의 지속적 폭력으로 인해 그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를 데리고 현재의 남편과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두 아이를 학대하여 보호시설에 입소되거나 1년간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제한 명령을 받기도 했으며, 그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다섯살 된 첫째 아이는 사망했다. 법원은 남편이 아이들의 목을 조르고, 벌을 세운 후 발로 차거나 목검으로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의 요구에 따라 목검을 내어주거나 “소극적으로 만류”하는데 그친 책임을 그녀에게 물었다. 1심 법원은 그녀가 새 남편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그의 폭력과 아동학대를 “감내”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남편의 초기 행태에 대하여 아동학대로 직접 신고까지 했던 그녀가 다시 그와 함께 살게 되면서 무력감에 빠지고 그의 “폭력적 성향”, CCTV 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라 본 것이다. 그녀의 행위는 그저 무력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화’를 돌우지 않고 아이에 대한 폭력을 속히 중단시키려는 방편이었을 수 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동학대에 대한 주류 논의와 같이 자신의 피학대 상황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을 아이에게 전가하거나 결국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스트레스를 분출(장희선 외, 2016; 이재정·박명숙, 2014)하여 학대에 동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보인다. 친밀한 관계의 젠더 동학이 어떻게 자녀에 대한 특정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동시 발생이라는 경향성을 이해하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실행에 있어서도 과제를 남긴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여성의 피학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세 사례의 남성은 평소의 아내학대가 인정되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아내학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개입 프로그램 역시 아동학대의 예방은 물론 ‘보호자’인 여성의 상황 개선, 남성중심적 가족 질서의 변화에도 실패할 수 있다(정혜숙, 2009; Gordon, 2002). 둘째, 아내학대의 목격 자체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 과제다. 아내폭력의 목격 자체가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해악과 함께 그것을 아동학대로 포착해야한다는 주장이 국내외 등장하고 있지만(이세원, 2020), 이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한 사례 역시 없었다.

2. 아버지다움과 자녀 살해 후 자살

남성성은 아내학대와의 중복발생 이외에도 아동학대의 다양한 쟁점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22건 중 사례15, 17, 18, 19 등 4건의 피고인은 자녀와 함께 죽음을 시도했으나 홀로 살아남은 이들이다. 과거 “자녀 동반 자살”로 명명되던 이러한 행위는 자녀가 죽음의 의미를 온전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 가능성을 사소화 한다는 논의와 함께 오늘날 “자녀살해 후 자살”로 명명되고 있다. 법원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을 “가부장제의 산물”이라 지칭하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부장제”는 젠더중립적이지 않다. 사례15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례의 피고인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도 자신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울증이 심화되었던 여성들이다. 사례17은 결혼 직후 아들을 출산했으나 빈곤, 남편의 외도와 우울증으로 결혼 2년차에 번개탄을 피우고 신경안정제와 수면유도제를 먹고 아이와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 아들은 사망했고 그녀는 실질적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3일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인지기능 장애로 당시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18, 19 피고인의 범행 과정 역시 이와 같다.

자녀살해의 일반적 행위 패턴과 동기의 성차_{sex}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은 그 과정에서 젠더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남성들의 자녀 살해는 앞서 1절의 사례12, 16 피고인과 같이 아내에 대한 보복이나 질투 등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배력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아이에 대한 폭력을 본인의 권한에

따른 적절한 훈육이라 생각하는 만큼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극단적 폭력 행사로 이어지게 되는 경향이 그 특성으로 보고되어 왔다. 반면 여성의 자녀살해(maternal filicide)는 스스로의 엄마노릇이 부적절하다는 자기 비난과 죄책감,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한 ‘나쁜 양육’으로부터 자녀를 해방시키기 위한 이타적 목적이 주된 동기가 되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Adinkrah, 2001; Stanton et al., 2000; Wilczynski, 1995). 자녀와 함께 죽음을 택하는 과정에 남성성, 모성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문기사에 등장한 사례를 분석한 국내의 한 연구 역시 이를 지지한다(이현정, 2012).

사례15의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 후 3세 아들을 키우다 양육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자 자살을 마음먹고 아들을 목졸라 살해했다. 하지만 그는 전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자신이 아이를 직접 키워야 한다며 데려왔고 실제 아이 양육은 그의 부모가 도맡았다. 자신 역시 자살할 생각이었다는 진술은 법정에서 번복되었고 결국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나머지 세 사례와 달리 죽음에 이르기 위해 스스로에게 행한 것 이상으로 아이에게 별도의 폭력을 행사했다. 그 밖에도 22개 사례 중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방임과 같은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목조름, 가격, 집어 던짐 등 적극적인 폭력 행사가 수반된 것은 모두 피고인이 남성인 사례(3, 9, 6, 10, 13, 15, 16), 혹은 남성과 함께 이 과정에 여성이 공범으로 참여한 사례4였다. 예컨대 세 아이의 아버지인 사례6의 피고인은 5세 아들이 3세 아들과 싸운 것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큰 아들을 구타하여 사망하게 했다. 그 역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훈육의 일환으로 이야기 했다. 사례13의 아버지 역시 5세된 딸의 식사태도가 좋지 않다고 방으로 데려가 폭력을 행사하고 다음날에도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저항을 제압해 사망케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오늘날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동학대의 전형에 더욱 가깝다.

폭력적 훈육을 당연한 행위로 여기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피학대 경험 등 생애 부정적 자극으로 인해 야기된 긴장은 폭력으로 외화되기도 하며 이는 남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Fronimos & Brown, 2010). 자녀에 대한 이타적인 목적이든 남성으로서의 지위 상실에 대한 분노든 자녀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관념 자체가 어떠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 역

시 마찬가지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은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으로 지적되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확장된 가족 관념과 네트워크로 인해 자녀를 다른 누군가가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자녀 동반 자살 시도의 경향이 크지 않음이 지적되기도 한다(Lee, 2009; 이현정, 2012 재인용). 또한 한국에서 가족은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생존 단위로서 작동해왔고, 교육, 주거, 금융, 보호, 부양 등을 1차적으로 가족적 의무로 만드는 정책들이 이를 심화시켜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장경섭, 2018).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실패를 가족의 실패로 여기며 자녀와 함께 죽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IV. 여성의 생애 경험

1. 폭력 순환이라는 문제 설정과 여성의 우울

아동학대와 아내폭력 관계에 대한 설명에 빈번히 소환되는 가설 중 하나는 어린 시절 그것의 직, 간접 피해 경험이 성인기에 마찬가지로 범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른바 폭력 순환에 대한 설명이다⁶⁾. 어린시절 가족간 폭력 행위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 공격적 행동의 정당성을 학습하게 된다는 차별접촉이론에 기반한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들 대다수가 범죄자 집단을 표본으로 수행되었기에 마찬가지로의 아동기 경험 이후에도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상당수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Widom & Osborn, 2021), 남성집단을 통해 도출된 가설을 여성 범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피학대 경험으로 인한 공격성을 내현화 하는 경향이 더욱 크다는 주장(Moylan et al., 2010)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여성들의 어린 시절 피학대 경험을 우울증 등 내현화 중심으로 포착하려는 연구설계의 관점 자체가 젠더화 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Godinet et al., 2014; Fronimos & Brown, 2010).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엄밀한 방법을 통한 실증

6) 2017년 한국의 가정폭력 피해실태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했다는 여성과 남성의 상당수가 아동기 부부폭력 혹은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선 외, 2017).

그 자체라기 보다 어린시절의 피학대 경험이 이후 아동학대로 이어지거나 절연되는 과정, 그 과정을 매개하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과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여성을 폭력이나 빈곤과 같은 억압적 구조의 피해자로서만 조명하는 것은 그들의 주체성이나 특정한 행위성^{agency}을 가능하게 된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Maher, 1997)과 함께 어린 시절 성적 피해나 성매매, 이른 결혼과 빈곤 등 하나의 요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여성의 생애 경험과 그것에 대한 의미화 과정에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그 효과로서 범죄를 설명하려는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Belknap, 2007).

앞서 제시한 사례17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남편의 실직, 외도와 경제적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양형조사 결과는 현재의 가족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 그녀의 우울증 야기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생애 경험들을 제시하고 있다. 친부는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때쯤 엄마와 별거를 시작했고, 엄마는 홀로 일을 하며 피고인을 키워왔으며 몇 년 전 계부를 만났으나 그의 병수발을 하느라 고된 삶이 지속됐다. 계부는 최근 사망했고 그로 인한 엄마의 정신적 고통은 심화됐으며 이 와중에도 이전부터 지속된 친부의 엄마에 대한 폭력으로 최근까지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장모를 피신시킬 정도였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독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지방 일대 커피숍과 호프집 점원 생활을 이어나갔고 그러다 전 남편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만19세에 딸을 낳았지만 전 남편의 지속된 폭력으로 그들을 떠나 생활하다 현재의 남편과 결혼했다. 결혼 직후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외도가 나타나던 즈음 아들을 임신했고, 임신 4개월이 될 무렵부터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친구 등 대인관계는 전혀 없었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타인이 손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집착하는 과민반응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녀의 삶은 젠더 폭력의 영향하에 놓여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남성의 학대를 직, 간접적으로 목격한 경험이 폭력에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아동학대에 이른 것이라는 기존 논의들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른 나이 시작된 독립과 빈곤, 삶의 안정화 수단으로서 이성애 결혼, 자신과 유비되는 엄마의 고통스러운 삶, 딸과의 이별 경험 등이 현재의 삶의 조건과 서로 맞물리면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상상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임승미, 2017; 추지현, 2016). 법원이 인정한 그녀의 아동학대 원인, 즉 우울

증이 야기된 과정을 여성들의 생애 경험과 그 상황에 대한 의미화 방식 속에서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Belknap, 2007; Maher, 1993).

여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동·청소년기의 성적 피해(Goldberg, 2006), 가사 노동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배제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Nazroo et al., 1997),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기 위한 침묵과 스스로의 욕망 부정(Nolen-Hoeksema, 2001) 등 다양하지만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타자의 성적, 감정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여성의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여성들의 우울증이 이와 같은 젠더화 된 삶이 초래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을 개인의 병리가 아니라 사회적 고통으로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2. 양육의 기술과 피돌봄 경험의 부재

생애 과정 및 경험에 대한 이해는 남녀 불문, 자녀 돌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에도 중요해 보인다. 22개의 사례 중 사례4, 5, 8, 14 등 4건 피고인들은 이른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하고 빈곤을 경험했으며, 적절한 부모노릇(parenting)에 대한 지지는 물론 그 모델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법원이 평가한 이들이다. 사례4의 피고인은 3세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 그녀의 동거남, 친구 등 세명이다. 엄마는 아이를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한 후 홀로 양육하다 공동피고인인 현재의 동거남을 만났고 둘은 모텔에서 별 직업 없이 생활했다. 그러다 여성의 고등학교 친구인 또 다른 여성과 함께 거주하게 되어 소도시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아이를 당장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게 되었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스트레스”의 상황이 야기됐다. 그리고 셋의 동거 시작 2주만에 아이는 사망했다. 아이가 투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넌 내 친딸이었으면 진작 나한테 죽었다” 말하는 남성 피고인의 주도하에 나머지 두 여성이 폭력에 가담했다. 밥을 억지로 먹이고 도구를 이용해 폭행했다. 판결문에 기술된 사망 당시 아이의 모습은 참담했다. 법원은 아이를 직접 양육해야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진단했지만,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과 부적절한 양육 행동이 단순한 선형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행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셋 모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왔다. 아이 엄마인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만18세에 실시한 심리, 지능 검사에 따르면 사회적 연령이 만7세 6개월에 불과했고 그 와중에 원치 않은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했다. 그녀의 친구인 공동피고인 여성 역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자살 충동으로 인한 입원도 여러 번 했다. 아이 엄마와 남성은 기초생활 수급비가 감면될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원룸텔에서 생활했다. 이들 모두 가족 등을 통해 돌봄을 받거나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버려나가기 힘든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엄마노릇의 역량이나 엄마됨^{motherhood}에 대한 인식은 생물학적 출산 경험^{maternity}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 아니다.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사회의 높은 관심에 비하여 정작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하는지가 누구에게나 자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사례5를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사례5의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혼자 출산 후 양육했다. 생계를 위해 출산 5개월여부터 외국인 바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고 젖병을 머리맡에 두고 아이를 홀로 둔채 새벽까지 일을 하는 생활이 반복되던 3개월째 아이는 사망했다. 아이에 대한 방임과 사망과의 구체적 인과관계는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생후 6개월의 아이 얼굴에 이불이 감기거나 바닥에 코와 입이 눌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하여 수시로 관찰하고 보살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2심 판결문에는 그녀가 주위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했고,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몸이 좋지 않은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생활하다 고등학교 중퇴 후부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등 양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기재되었다. 사례14의 피고인 여성의 상황 역시 유사했다. 그녀의 아이는 태어날때부터 뇌병변증상 장애를 갖고 있었고 사망 당시(생후 22개월)에도 생후 2-3개월 신생아와 같은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아이는 그녀와 함께 사용하는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에 빠져 질식사했고 그녀 역시 사례5처럼 아이를 침대에 눕혀 재워둔 후 혼자 외출을 했다. 22살의 남편과 함께 새벽까지 밖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 사례8의 피고인인 어린 부부 역시 마찬가지다. 2심 법원은 아이를 방임한 행위를 넘어 그들의 부모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평소 음주, 흡연 및 쓰레기 방치 등 일상적 행위 습관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사례 피고인 모두가 부모나 다른 이들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모델이나 원룸에서 생활하며 20대 초반 나이에

부모가 되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의 절반 가량은 부모 혹은 보호자의 경제적인 수준을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모 일방의 부재 혹은 청소년 기 피해 및 가해를 경험하는 등 누군가의 지지와 돌봄을 기대하기 힘든 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윤정 외, 2013:52).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연구 역시 원가족과의 관계나 그 밖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김지연 외, 2013), 그들의 부모 역시 어린시절 적절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녀를 돌본 것을 보고하고 있다(정승민, 2018).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기대와 가치는 관련 지식의 습득, 사회적 지지망의 존부와 같은 현재적 상황을 넘어, 생애에 걸친 피돌봄의 경험 속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V. 재생산권 부재와 돌봄노동

1. 영아 살해와 권리 없는 책임

IV.2절에 제시된 여성 피고인들의 임신, 출산 과정이 보여주듯 마찬가지로 피돌봄 경험의 부재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성별화 된 존재로서 생존하고 있다. 이때 젠더화 된 섹슈얼리티 규범은 여성의 여하한 성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다. 이는 법적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사례20의 피고인은 언니(24세)의 동거남(26세)과 2년 넘게 성관계를 해오다 임신을 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확인한지 7개월여 후인 2020년 2월,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창문 밖으로 던져 사망케 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지적 능력이 제한되어 일상 생활의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기능적 수준일 뿐 추상적인 사고는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며, 별다른 직업 없이 아버지로 부터 소액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현 주거지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여관을 전전했고 가족들은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출산을 맞이하도록 방임했다. 그런데 법원은 언니의 동거남은 물론 부친의 지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받은 상황을 두고 그녀가 “성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G)에 터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녀의 빈곤 상황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가족이나 주위의 돌봄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 부재로 인해 심화된 성적 취약성은 오히려 ‘성범죄’에 대한 높은 재범위험성으로 평가된 것이다. 복지 대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빈곤과 ‘성적 방종’에 대한 책임을 개인화하는 부권주의 형벌 국가의 모습(Gelthrope, 2010; West & Lichtenstein, 2006)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 사례와 같이 사망 아동의 연령이 1세 미만인 경우는 전체 42명 중 19명에 해당하는 45.2%로 가장 많다(보건복지부, 2020:71).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2건 중에서도 이는 8건에 해당했다. 그리고 이 중 절반(사례 5, 20, 21, 22)은 엄마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사례22의 피고인은 2020년 1월,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중단 수술을 요구했으나 임신 28주가 지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분만하다 변기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 집 마당에 묻었다. 2심 법원은 “친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지나 능력을 온전히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판단이다. 유사한 상황이었던 사례5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로서 양육의 부담을 홀로 안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피고인 “스스로 초래한 것” 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피고인이 질 수 밖에 없다고 설시했다. 사례21에 대해서는 미숙아의 생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백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홀로 출산한 행위에 책임을 묻고 있다. 피고인이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수치심과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될 책망, 비난의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덧붙이면서 말이다.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새로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모자보건법, 의료법 등 관련 조항은 남아 있기에 의료체계를 통한 여성들의 임신 중단 실행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위의 사례들은 성과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실현이 어려운 문화적 조건은 여성들의 책임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동 보호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화와 함께 2021년 5월, 형법상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110313호)

이 발의되었다. 이와 같은 낙태죄 폐지와 영아살해죄 법정형 상향 움직임의 동시 등장은 우연이라기보다 후자가 전자의 기능적 보완물이 되고 있는 상황, 여성의 몸에 대한 젠더화 된 통제 기제가 ‘아동 보호’를 매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2. 양육 부담과 엄마노릇의 차이들

자녀 양육의 과정은 분노, 우울, 좌절감 그리고 사랑과 기쁨 등 다기한 감정을 오가게 만들지만 그 감정의 불안정성이 야기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 행동을 더욱 높게 지각하고 더 강압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김지연 외, 2003; 조숙 외, 2015). 이러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포함해 양육 과정에서 겪게 되는 교육, 의료 등 경제적 부담이나 시간 조정, 그 밖의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맺기 등 다양한 어려움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 양육 부담감이다. 즉 양육 부담감은 그저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개인적 심리 반응이 아니라, 양육자가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과 양육을 둘러싼 제반 조건 및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 키테이가 돌봄 제공과정에서 파생되는 돌봄제공자의 의존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기인하는 의존이라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Kittay, 2019). 돌봄노동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감은 22건의 사례 중 7건(사례 1,2,7,11,14,18,19)에서 발견될 정도로 아동학대에 있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IV장에 제시한, 우울증이 아동학대의 주된 원인으로 진단된 여성 피고인들은 그간 아동학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주목해 온 것처럼 양육 스트레스 혹은 양육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Goldman et al., 2003; 민현숙·문영경, 2013; 이재정·박명숙, 2014). 사례 18의 피고인은 9세의 딸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엄마다. 그녀의 딸은 사회적 연령이 약 2세 5개월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가족은 물론 아이가 다닌 학교의 교사, 피고인의 담당 의사가 선처를 호소할 정도로 그녀는 장애아를 위해 최선의 양육을 해왔고 평소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계 욕구가 활발한 반면 장애아를 홀로 돌보느라 타인과 접촉하고 친밀감을 공유할 기회가 제한된 채 양육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부부 관계는 원만했지만 남편 역시 딸의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약물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우울증을 겪었다. 사례7 피고인의 아들은 지적장애 3급, 사례14의 22개월된 아이는 뇌 병변중증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사례18처럼 홀로 아이를 돌보며 빈곤에 시달렸던 전업주부들이다. 이들이 엄마노릇 수행 과정에서 느꼈을 혼란과 고통에 대하여 엄마라면 충분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위로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영유아나 심각한 중증장애인 등 불가피하게 의존적인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는 상호 성장을 경험하거나 기대하기 힘든 돌봄의 관계, 그 한계나 완결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며 이로 인해 돌봄제공자의 상황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⁷⁾ 자녀의 장기적 질병과 만성적 장애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물론 아동학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노충래, 2002).

많은 아이,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전업주부⁸⁾가 된 여성들의 상황이 취업모들과 마찬가지로 보기는 힘들었다. 사례7의 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지적 장애 3급의 딸(12세), 현 남편의 아이 둘(2세, 10개월)을 홀로 돌보았다.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남편이 큰 딸에게 함부로 훈육을 하는 상황에 화가날 때마다 그녀의 딸에 대한 증오감이 더해졌다. 이에 더해 가난, 현재 남편과의 불화가 중층적으로 작동하면서 딸에 대한 체벌도 심화되어 갔다. 그러다 힘겹게 재운 두 아이를 큰 딸이 깨우고 제지해도 말을 듣지 않자 영하의 날씨에 찬물의 욕조에 들어가게 해 사망케 했다. 2심 판결문에 기재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역시 지능지수 72로 경계선 수준이었으며,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해소할만한 다른 심리적 자원은 부족했다. 가난, 우울증과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인정된 사례1의 피고인은 홀로 두 아이를, 사례11의 피고인은 남편의 폭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이 셋을 양육한 엄마다. 이들의 상황은 젠더, 계층, 장애가 맞물리면서 엄마노릇을 하는 여성의 위치를 어떻게 상이하게 구성해내는지를 보여준다.

취업모의 심적 부담은 대부분 공동 양육자와의 역할 갈등에서 오는 분노, 아이를 옆에서 돌보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주되다면, 전업주부 대부

7) 2013년 실시한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주 돌봄자는 91.2%가 어머니이며 장애아동을 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을 한 부모는 49%에 달했고, 근무시간을 줄인 경험은 40.8%에 이르렀다(최복천 외, 2013).

8) 2020년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사망 사례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다니지 않았던 경우가 전체의 48.8%에 이른다(보건복지부, 2020:72).

분은 육아과정 그 자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양상이 보고되고 있다(조숙 외, 2015). 또한 취업모들은 아동을 직접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의 입장보다는 위탁 시설에서 아동에게 가해진 학대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는 피해자 내지 제3자의 입장에 더 자주 처해있는 반면, 전업주부인 여성들은 양육스트레스 그 자체로 인해 아동 학대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김미예·박동영, 2009).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와 경력단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취업지원 및 24시간 보육지원 등이 여성 정책의 주된 과제로 설정,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고무적이지만 아이들을 온전히 홀로 돌봐야 하고, 장기적 취업이나 자녀 성장에 대한 기대, 심지어 관련 정보 접근조차 어려운 위와 같은 여성들에게 일·생활 양립은 거리가 멀다. 현재 여성정책이 상정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묻게 되는 이유다. 나이가 돌봄을 그쳐 공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재분배하는 것이 종국적 해법일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엄마는 물론 어린이집 교사와 같이 가족 안팎에서 그 역할을 떠안고 있는 돌봄제공자들의 구체적인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김수정·황정미, 2019)과 더불어 돌봄의 무게를 재고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 살펴본 22개의 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전형화된 아동학대와 달리 임신 중단의 실패와 분만 직후의 영아살해,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 남성의 가족 통제 등 그 양태와 배경이 다양하다. 이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쟁점과 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아동학대 담론에서 남성의 비가시화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젠더 관계나 남성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내학대와 자녀학대가 그저 동시 발생을 넘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체적 메커니즘,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 남성 정체성과 그 불안을 심화시키는 가족 중심 복지체계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개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실천적이고 장기적인 개입 방안이 제언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육 부담감과 우울로 환원할 수 없는 성적 존재로서 여성의 생애 경험, 유년기 성적 피해나 목격, 불안정 노동의 지속과 이른

결혼, 빈곤, 사회적 지지망 등 피돌봄 경험의 부재와 그 연쇄가 엄마 및 아내됨에 대한 인식과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생애 경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젠더 관점의 개입 프로그램 구축 역시 가능해 보인다. 셋째, 젠더는 계층, 장애, 섹슈얼리티와 교차하면서 돌봄제공자로서 여성의 위치와 취약성을 상이한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아동 보호의 1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부과하는 형벌화 방식은 아동보호에도 실패를 야기하고 있다. 돌봄제공자에 대한 돌봄 필요성 인식을 통해 아동학대 현상을 바라보는 것, 나아가 여성을 ‘보호자’로 호명해내는 젠더 체계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페미니즘은 젠더 폭력, 돌봄, 교차성,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관심을 버리면서 그 개념화와 사회 운동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분절적 접근으로 인해 그것들의 총체화 된 형태라 할 수 있는 아동학대라는 현상에 대해 구체적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폭력 순환 가설과 같이 젠더를 탈각한 채 양적 대표성 자체만을 지향하는 연구, 여성들 내부의 차이와 구체적 삶의 맥락을 소거한 양육 부담감에 대한 실증이 아동학대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는 예방 기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데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영아살해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 시도에 대한 문제제기,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 여성의 경험과 필요를 고려한 교정정책이 요구된다. 일·생활 양립 지원, 경력단절 예방이나 돌봄 서비스의 공공화와 같은 정책적 접근이 과연 어떤 여성들을 그 수혜자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되묻고 여성정책의 기본 계획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호명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젠더 관계의 모순을 간파하면서도 대응하는 전략들, 그 저항을 좌절시키는 사회적 조건들을 식별하고 개입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아동의 안녕은 돌봄 제공자의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돌봄 노동과 생애 지속된 성적 존재로서의 경험으로 인해 여성들의 삶의 조건이 취약해지고 있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제공자로서 여성을 형벌화, 의료화 하는 통제 방식을 대안으로 삼는 접근에 대한 비판적 젠더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제한적 사례를 다루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온전히 포착되지 못한 쟁점들에 대한 향후 연구 역시 개진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미예·박동영,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대”, 아동간호학회지 제15권 제4호, 2009.
- 김수정·황정미, “사립유치원 비리와 돌봄 공공성: 회계 투명성을 넘어”, 페미니즘 연구 제19권 제1호, 2019.
- 김영옥·메이·이지은·전희경,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봄날의 책, 2020.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곽종민·박민영,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노충래,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13호, 2002.
- 민현숙·문영경,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제22권 제1호, 2013.
- 박언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모성 경험의 구성과 행위상”, 한국여성학 제30권 제1호, 2014.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2020.
- 신윤정·이소영·유재언,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II: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안성경·양지혜·정익중,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38권, 2012.
- 이상균·이봉주·김세원·김현수·유조안·장화정·진미정·박지명, “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제48권 제3호, 2017.
- 이세원,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 아동학대 피해자로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1권 제1호, 2020.
- 이인선·황정임·최지현·조윤주, 가정폭력 실태와 과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 이재경·박명숙,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발생 위험요인으로써의 남편의 음주, 아내폭력,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48호, 2014.

- 이현정, ““부모-자녀 동반자살”을 통해 살펴본 동아시아 지역의 가족관념”, 한국학연구 제40권, 2012.
- 임승미, “청소년 미혼모의 모성경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사회 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17.
- 장경섭, 내일의 종언(終焉)? :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2018.
- 장희선·김기현·김경희,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 연구: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제54권, 2016.
- 정승민, “최근 우리나라 자녀살해의 양상”,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4권 제2호, 2018.
- 정혜숙,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복발생을 둘러싼 여성주의비판모델과 여성복지적 과제의 검토”, 한국여성학 제25권 제4호, 2009.
- 조숙·정혜정·이주연,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비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5.
- 추지현, “성폭력을 엄벌하다”, 한국여성학 제30권 제3호, 2014.
- _____, “성/폭력 증충피해와 젠더”, 한국여성학 제32권 제4호, 2016.
- Adinkrah, Mensah, “Patriarchal Family Ideology and Female Homicide Victimization in Fiji”,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2(2), 2001.
- Ashe, Marie & Naomi R. Cahn, “Child Abuse: A Problem for Feminist Theory”, Texas Journal of Women and the Law 2, 1993.
- Belknap, Joanne(윤옥경 역), 여성범죄론, 교우사, 2007.
- Bennett, Larry & Oliver J. Williams, “Substance Abuse and Men who Batter: Issues in Theory and Practice”, Violence Against Women 9(5), 2003.
- Chesney-Lind, Meda, “Patriarchy, Crime, and Justice Feminist Criminology in an Era of Backlash”, Feminist Criminology 1(1), 2006.
- Collins, Elizabeth A. et al., “A Template Analysi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Survivors’ Experiences of Animal Maltreatment: Implications for Safety Planning and Intervention”, Violence Against Women 24(4), 2018.
- Folbre, Nancy(윤자영 역), 보이지 않는 가슴, 토하나의문화, 2001.
- Fox, Marie, “Feminist Perspectives in Theories of Punishment”, In Feminist

- Perspectives in Theories of Punishment, Routledge, 2000.
- Fronimos, Ioannis, I. & D. Brown.,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male depression”, A social psychological review, 12(1), 2010.
- Gelstrophe, Loraine, “Women, crime and control”,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10(4), 2010.
- Godinet, Meripa T. & Fenfang Li & Teresa Berg, “Early Childhood Maltreatment and Trajectories of Behavioral Problems: Exploring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Child Abuse & Neglect 38(3), 2014.
- Goldberg David, “The Aetiology of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36(10), 2006.
- Goldman, Jill et al., A Coordinated Response to Child Abuse and Neglect: The Foundation for Practice, 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ren’s Bureau, 2003.
- Gordon, Diana R., “Drugspeak and the Clinton Administration: A Lost Opportunity For Drug Policy Reform”, Social Justice 21(3), Social Justice/Global Options, 1994.
- Kittay, Eva F.(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3.
- Kruttschnitt, Candace, “Contributions of Quantitative Methods to the Study of Gender and Crime, or Bootstrapping Our Way into the Theoretical Thicket”,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2(2), 1996.
- Lapierre, Simon & Isabelle Côté, “Abused Women and the Threat of Parental Alienation: Shelter Workers’ Perspectiv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5, 2016.
- Lee, HyeonJung, “States of Suffering: Female Suicide, Subjectivity, and State Power in Rural North China”, Ph.D. Thesis an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Washington University, 2009.
- Linda Gordon, Heroes of Their Own Lives: The Politics and History of Family Violenc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2.

- Lister, Ruth, “Children (but not women) First: New Labour, Child Welfare and Gender”, *Critical Social Policy* 26(2), 2006.
- Maher, Lisa, “Punishment and Welfare: Crack Cocaine and the Regulation of Mothering”, In Claire Feinman(ed.), *The Criminalization of a Woman’s Body*, The Haworth Press, 1992.
- _____, “Readings of Victimization and Volition”, In *Sexed Work: Gender, Race and Resistance in a Brooklyn Drug Market*, Clarendon Press, 1997.
- McDaniel, Marla & Kristen S. Slack, 2005, “Major Life Events and the Risk of a Child Maltreatment Investig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2), 2005.
- Messerschmidt, James W. and Stephen Tomsen, “Masculinities and crime” in DeKeseredy, W. & Dragiewicz, M., *Routledge Handbook of Critical Criminology*, Routledge, 2018.
- Miller, Jody, “2. Doing Crime as Doing gender? masculinities, femininities, and crime” in Rosemary Gartner & Bill McCarthy, *The Oxford Handbook of Gender, Sex, and Cri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Moylan, Carrie A. et al.,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1), 2010.
- Nazroo, James Y. & Angela C. Edwards & George W. Brown, “Gender Differences in the Onset of Depression following a Shared Life Event: a Study of Couples”, *Psychological Medicine* 27(1), 1997.
- Nolen-Hoeksema, Susan,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2001.
- Semaan, Ingrid & Jana L. Jasinski & Anne Burbriski-Mckenzie, “Subjection, Subjectivity, and Agency: The Power, Meaning, and Practice of Mothering Among Women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Abuse”, *Violence Against Women* 19(1), 2013.

- Stanton, Josephine & Alexander Simpson & Trecia Wouldes, “A Qualitative Study of Filicide by Mentally Ill Mothers”, *Child Abuse & Neglect* 24(11), 2000.
- Tajima, Emiko A., “Correlates of the Co-Occurrence of Wife Abuse and Child Abuse Among a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6), 2004.
- Tronto, Joan C.(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3.
- Violence Against Women* 5(2): 134-154
- West, Desirée A. & Bronwen Lichtenstein, “Andrea Yates and the Criminalization of the Filicidal Maternal Body”, *Feminist Criminology* 1(3), 2006.
- Widom, Cathy S. & Max Osborn, “The Cycle of Violence: Abused and Neglected Girls to Adult Female Offenders”, *Feminist Criminology* 16(3), 2021.
- Wilczynski, Ania, “Child Killing by Parents: A Motivational Model”, *Child Abuse Review* 4, 1995.

Gender Anlysis of Child abuse: Masculinities, Caring, Reproductive Rights

Choo, Jihyun*

This study started with the necessity for gender-based research on child abuse. Accordingly, I examined 22 cases filed with courts in 2020 as cases in which children died due to abuse and suggest the issue of gender research on child abuse. First, Studies on mulitple victimization of the wife abuse and child abuse, different ways of meaning suicide after filicide, and differences in offending methods ask to view child abuse as a gendered phenomenon. Second, women's various lived experiences affect women's mothering as well as their perception of roles in the family. It suggests that transformation of gender is a prerequisite for preventing child protection and need for a correction policy that considers the life courses of women. Third, not only gender that distributes care responsibilities unequally, but also class, disability, and depression created women's vulnerability as care provider intersectionally. In addition, the reality that women's rights to sexuality and reproduction are not guaranteed makes infanticide inevitable. Thi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to reevaluate the value of caring.

❖ key words: child abuse, gender, wife abuse, masculinities, caring, feminist criminology

투고일 : 11월 30일 / 심사일 : 12월 28일 / 게재확정일 : 12월 28일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